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환경보건학회지의 논문심사, 편집 및 발행을 위한 제반 편집위원 활동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기술지에 대한 발간방침의 수립, 투고논문의 게재 심사 및 편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한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노출평가, 독성학 및 환경 역학, 위해성평가, 대기 및 실내공기 오염 및 측정, 식품 및 미생물 위해, 산업보건, 환경보건 정책 등의 전문분야별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소집에 참석하여야 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역할)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며,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이하 '위원')은 학술지의 담당 편집이사로 보임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전문분야별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5.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 ① 위원장은 환경보건학분야에서 학문적 업적과 학술활동이 뚜렷하여 국내외적인 명성이 높아 환경보건학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학계 전문가로 하며, 위원회는 추천할 수 있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 전임교원 또는 동등한 자격의 연구원 등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연구활동이 활발한 자로, 전문가 추천과 위원장 제청에 의해 학회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6.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이사(2년)와 같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의 연임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위원의 연임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가능하다.
  -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충원이 필요하면 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충원할 수 있으며,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전체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투고원고의 게재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단, 위임장의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의결 시에는 다수의 결정에 위임장의 수를 포함시킨다.
8. (학술지 편집) 학술지의 편집은 심사에 통과된 논문 중 원고의 종류(총설, 원저, 연구단신, 시론, 서신, 편집인의 글), 일반 논문과 특별 또는 초청논문 여부 등을 고려해 순서를 정하고 표지 및 인쇄물과 전자 게재물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술지 편집의 권한은 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있으며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위원장이 진다.
9. (학술지 게재의 제한)
  - ① 위원회는 학술지의 취지에 벗어나는 논문을 심사 후 과정에서 제한할 수 있다.
  - ② 학술지에 동일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논문을 동일 호에 2편 이내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10. (원고의 수정 및 교정)
  - ① 위원회는 채택된 원고 내용을 제외한 용어, 문자 및 맞춤법 등을 본 학술지 투고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수정할 수 있다.
  - ② 편집을 위한 원고의 최종 교정은 저자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며, 교정결과를 1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보칙
  - ① (관련 규정) 학술지의 투고, 투고방법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편집간사) 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관련 실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③ (기타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2. 부칙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